■ 민족문화연구 제86호(2020.02.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165-195.
http://doi.org/10.17948/kcs.2020..86.165

충절과 정절의 정치학
—조선후기 절(節) 담론의 전개 양상—

이숙인(李淑仁)*

목 차

1. 절(節)의 개념과 조선후기
2. 조선후기 충절의 정치학
3. 조선후기 정절의 정치학
4. 절(節)의 젠더 정치학

국문초록

병자호란 이후 사회통합의 이름으로 제기된 충절과 정절의 담론을 두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분석했다. 먼저 전란 시 강화도에서 화약고의 폭발로 죽은 김상용(1560-1638)이 충절지사(忠節之士)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사건 직후 사고사(事故死)로 보고된 그의 죽음이 사절(死節)로 결정되는 과정에는 특정 집단의 정치권력이 개입되었음을 주장했다. 특히 어떻게 죽든 죽음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충절 개념과 충신의 후손에게 주어지는 정치·경제상의 특혜 등은 죽음을 과도하게 의미화하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이에 김상용 사절론이 안고 있는 논리적 오류를 드러내면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했을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하나는 김상용의 '자결'에 사용된 화약고의 군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사적 의미를 따지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죽음이 사절(死節)이라면 곁에 있다가 의도하지 않게 죽은 수많은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다.

다음은 청군(淸軍)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속환녀(贖還女)를 둘러싼 담론에 주목했다. 당시 쟁점이 된 것은 속환 부녀와의 이혼 문제인데, 적에게 끌려갔던 여자에게 조상 제사를 맡길 수 없다는 이유였다. 전란의 피해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는 이런 방식의 주장은 여성 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적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적에 대항하여 자결한 여성은 열녀가 되는 한편 천신만고 끝에 살아 돌아온 여성은 죄인이 되는 상황이었다. 환향녀 보호를 강조하는 국가 정책에 반발하며 그녀들을 정절을 잃은 부녀로 공식화한 정치 집단에 주목하여 김상용 충절론과의 연계성을 밝혔다. 충절과 정절이 병자호란이라는 구체적인 사건과 만나 어떻게 구현되고 해석되는가를 통해 정치권력과 젠더권력이 빚어낸 조선후기 사상의 특성과 한계를 논의했다.

주제어: 충절, 정절, 젠더, 병자호란, 김상용, 속환녀.

1. 절(節)의 개념과 조선후기

전통 사회를 이끈 핵심 개념인 충(忠)·효(孝)·열(烈)은 군신·부자·부부 관계에서 신하·자식·아내에게 요청된 덕목이다. 여기서 충과 열은 혈연관계에 기초한 효 개념과는 달리 인위적인 성격이 강하다. 즉 효가 천연으로 주어진 도덕 감정이라면 충과 열은 노력과 의지를 요구한다. 자연적이라고 본 효의 실천이 시대에 따라 변하듯이 관계적이고 인위적인 성격이 강한 충과 열의 변화는 더 큰 폭을 보인다. 양란을 겪은 조선후기에서 이것은 충절과 정절[열절]로 그 시대정신을 만들어간다. 충절과 정절은 절의나 절개로 풀이되는 '절(節)'의 개념이 남녀 각각에게 구현된 서로 다른 모습이다.

신유교를 정치이념으로 한 조선은 충신을 현창하고 절부[열부]를 발굴하는 것을 정책의 일환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충신이나 열부가 입신양명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먼저 의리와 절의를 내용으로 한 남성의 절(節)은 임금 및 종묘사직에 관계되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종통수호의 대내문제에 목숨을 바친 유형과 국권 수호 등 국제 문제에 생(生)을 던진 유형이 있다. 전자를 대

표하는 유형으로 정몽주와 사육신이 있다면 후자는 임병양란의 과정에서 요구된 충절지사들이다.[1] 여기서 주목할 후자의 모델, 즉 병자호란 이후에 전개된 충절 개념에는 조선후기의 사상적 특성이 들어 있다. 바로 맹자(孟子)의 사생취의론(捨生取義論)[2]과 주희(朱熹)의 의리명변론(義利明辯論)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 생(生)과 의(義)를 대립시키고, 의(義)와 리(利)를 대립시키는 구도가 조선의 구체적인 상황과 만남으로써 죽음이 절의의 구현과 동일시된 것이다. 사절(死節)이라는 용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떻게 죽든 죽음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의 충절 의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김상용 사절론(死節論)을 통해 이 문제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본다.

한편 절(節)이 여성과 결부될 때 절개 또는 정절이 되는데,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덕 개념이었다. 그런데 그 역사적 전개를 보면 정절이 구체적인 부부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성적 순결'이라는 여성 일반의 도덕 개념으로 확장된다.[3] 즉 여자의 정절은 그 남편과 무관하게 사회나 국가가 관장하게 되는데, 실절(失節) 여성을 국가가 나서서 응징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게다가 정절이 정쟁(政爭)의 도구가 될 때 절(節)의 개념에 내포된 주체의 의지나 정신은 무의미하게 된다. 이에 속환녀(贖還女)를 '정절 잃은 부녀'로 규정한 것의 문제와 전란의 피해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나타난, 당시 지식인 세계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속환녀 윤씨의 이혼 논쟁을 통할 때 정절의 젠더정치학적 의미가 분명해질 것이다.

여기서 다룰 충절과 정절의 두 사례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사건이다. 절(節) 개념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결된 사건이고, 동일한 정치 집단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분리시킬 수 없는 사건이다. 따라서 충절과 정절이 병자호란이라는 구체적인 사건과 만나 어떻게 구현되고 해석되는가에 주목하여 정치권력과 젠더권력이 빚어낸 조선후기 사상의 특성과 한계를 논하고자 한다.

---

1) 유정동, 「신유학파의 절의사상」,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10호,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1982.
2) 『맹자』 告子 上. "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捨生而取義者也."
3) 이숙인, 『정절의 역사』, 푸른역사, 2015, 351-368면 참조.

2. 조선후기 충절의 정치학

1) 충절지사(忠節之士)의 탄생

충절지사가 된 김상용(1561-1637)은 이후 각지의 사당과 서원을 통해 숭모되었다.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에서 피난 중이던 그는 청군(淸軍)이 섬을 압박해오자 남문루(南門樓)에 있던 화약고에 불을 질러 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죽음은 '적군에게 사로잡혀 구차하게 사느니 사대부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라의 명예를 높인' 사절(死節)의 행위로 의미화되었다. 그런데 당시의 관련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에게 충신의 칭호를 부여하기까지 많은 논란과 다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화약고가 폭발하여 죽었다는 것이 사실(fact)의 영역이라면, 폭발하게 된 경위와 죽은 이유를 밝히는 것은 해석의 영역이었다.

즉 김상용의 죽음을 '의리를 위한' 사절(死節)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장이 있다면, 실화(失火)로 인한 사고사(事故死)로 보는 다른 하나의 주장이 있었다. 이렇게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진실'을 향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정치적 공격이 뒤따르면서 매우 시끄러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결국 김상용은 충절의 칭호를 받게 되는데, 김상용 쪽에서 보면 이것은 치열한 투쟁을 통해 획득한 '영광'이다. 단순 사고사를 주장한 쪽에서 보면 거짓을 진실로 바꾸어낸 담론 권력의 승리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죽음에 대한 그의 진실이 무엇이며, 사절(死節)로 인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무엇인가. 이것은 한 인물 그 자체보다는 그를 통한 정치적 담론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

김상용의 죽음을 알리는, 날짜 상 가장 앞선 기록은 사망 당일인 1637년 1월 22일자 실록이다.

> 전 의정부 우의정 김상용이 죽었다. 난리 초기에 김상용이 상(上)의 분부에 따라 먼저 강도(江都)에 들어갔다가 적의 형세가 이미 급박해지자 분사(分司)에 들어가 자결하려고 했다. 이어 성의 남문루에 올라가 앞에 화약을 장치한 뒤 좌우를 물러가게 하고 불 속에 뛰어들어 타죽었는데, 그의 손자 한 명과 노복 한 명이 따라 죽었다. (…) 정승으로서 칭송할 만한 업적은 없다 하더라도 한 시대의 모범이 되

> 기에는 충분했다. 국가가 위망에 처하자 먼저 의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으므로 강도의 인사들이 그의 충렬(忠烈)에 감복하여 사우(祠宇)를 세워 제사를 지냈다.[4]

『인조실록』은 효종 1년(1650)에 착수되어 효종 4년(1653)에 완성되었다. 따라서 당일의 기록이라 하더라도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작성 당시의 원칙과 '진실'에 근거하여 편집 재구성된 것이다. 예컨대 여기에 기술된 '강도에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낸 것'은 사건이 난 지 1년 후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사건 15년 뒤에 나온 김상용에 대한 공식 기록은 사건 당시의 것과 어떤 차이가 있고, 공식 기록으로 합의되기까지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하는 물음이 가능하다.

사망 당일의 것으로 편성된, 15년 후의 기록에는 김상용 사건이 걸어온 험난했던 여정이 함축되어 있다. 실록은 사실에 가깝도록 하되 충신의 조건에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구분하고, 숨기거나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술된 것이다. 다시 말해 논쟁이 되었던 부분을 수사적으로 잘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상(上)의 분부에 따라 강도에 들어갔다"거나 "좌우를 물러가게 하고 불 속에 뛰어들었다"거나 "손자 한 명과 노복 한 명이 따라 죽었다"거나 "강도의 인사들이 그의 충렬에 감복했다"는 등이다. 이 기사를 사실에 부합하게 보완한다면 77세의 김상용은 강도에 먼저 들어가는데, 노약자를 우선 피난시키라는 왕의 분부에 따른 것이다. '왕의 분부'라는 말에 김상용이 공적인 임무를 받은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실제로 이 표현이 김상용 숭모 서사에서 활용된다.[5] 남문루에 있다가 김상용과 동시에 죽은 자는 손자와 노복 두 사람뿐 아니라 많은 수로 밝혀졌다.[6] 동시에 목숨을 잃은 자를 두 사람만 적시한 것이나 "따라" 죽었다는 표현은 많은 사람의 죽음

---

4) 『인조실록』 인조 15년(1637) 1월 22일.

5) 김상용 충절 담론이 전개되면서 강도에 들어간 것을 공적인 임무를 띠고 간 것으로 서술하는데, 이는 국가와 군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으로 인식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대표적으로 김상헌, 김창협 등의 친속이 이런 담론을 주도한다.

6) 홍명형, 김익겸, 권순장 등 피난 간 사대부 친족은 물론 성안에 거주하던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김상헌은 "따라 죽은 자가 8, 9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김상헌, 「伯氏右議政仙源先生行狀」, 『청음집』 권37.

이 그의 사절(死節)을 의심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사건 발생 15년 후에 기록된, 사건 당일의 기사는 김상용이 죽은 사건 그 자체와 거리가 있다.

실록보다 덜 '다듬어진' 『승정원일기』에는 이날에 해당하는 기록이 없고 사고 후 40여 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의 죽음이 처음으로 언급된다. 그 내용은 김상용의 상례에 비용을 대주라는 왕의 하교인데, "세상을 떠난 영돈녕부사 김상용의 상례(喪禮)"[7]라고 한다. 여기서는 김상용의 죽음을 사절로 보는 어떤 시사도 없다. 그런데 사고가 난 지 7여 달이 지난 8월 16일자 『승정원일기』의 기록에서 처음으로 김상용 사절설(死節說)이 등장한다. 여기서 김상용은 '구차히 살아남은' 윤방(尹昉)[8]과의 비교 속에서 강도가 함몰될 때 의리를 지켜 죽은 신하로 자리잡는다.[9]

다시 2개월 후, 김상용의 사절설은 더욱 박차를 가하여 국가 차원의 치제(致祭)를 요구하기에 이른다. 왕은 김상용의 제문에서 '태산처럼 의리를 무겁게 하였고 홍모(鴻毛)처럼 목숨을 가볍게 여겼다'고 한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듯하다며 돌려보낸다. 이에 수찬 조중려는 김상용의 죽음은 살신성인(殺身成仁)이 분명하며 제문의 서술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맞섰다. 왕은 말한다.

> 착한 것을 칭찬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칭찬하는 말이 참되고서야 죽은 자가 영화롭고 산 자가 사모할 것이다. 국가의 사체(事體)는 매우 중대한데, 어찌 칭찬만 위주로 하여 진위를 가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서계(書啓) 가운데에 있는, 짐짓 불을 떨어뜨렸다는 말도 그럴듯하지 않다. 이 제문은 도로 내어 주라.[10]

---

7) 『승정원일기』 인조 15년(1637) 3월 4일; 3월 9일; 3월 10일.
8) 『인조실록』 15년(1637) 7월 7일. 尹昉은 원로대신으로 宗社의 일을 부탁받고도 죽음으로 지키지 못해 신위를 더럽히고, 왕의 命이 없었는데도 적진에 먼저 가서 通情한 점 때문에 죄를 뒤집어썼다. 이에 왕은 윤방이 적진에 간 것은 종사를 위한 것이지 임금을 잊고 나라를 파는 행위가 아니라고 변호한다.
9) 『승정원일기』 인조 15년(1637) 8월 16일.
10) 『인조실록』 15년(1637) 10월 28일.

왕이 김상용의 치제를 거절하자 승정원은 다시 계를 올리며, 절의를 지킨 필부필부(匹夫匹婦)의 죽음에도 포상의 은전을 베푸는데, 대신의 죽음을 애매하다며 버려두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한다. 이에 정원 김휼(金霱)은 사건의 전말을 새롭게 구성하여 보고한다. 사고가 난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 대개 일이 급해지자 김상용이 겉옷을 벗어 하인에게 주고 곧 성문루(城門樓)에 올라가서 화약 상자를 가져다 놓고 남초(南草)를 핀다는 핑계로 불을 가져다가 스스로 불살랐고 그 하인이 받은 옷을 가져다가 초혼(招魂)하는 데에 썼다 합니다. (…) 김상용이 남초를 피우지 않는 것은 나라 사람이 다 아는 바인데, 어찌 목숨을 버릴 때에 이르러 초심을 바꾸어 남초를 피우려 하였겠습니까.[11]

위의 내용은 김상용이 담배 공초를 화약고에 잘못 던져 폭발 사고로 죽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승정원의 보고를 받은 왕은 김상용의 절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재차 설명한다. 즉 나라의 법이란 사사로운 정을 용납할 수 없으므로, 왕으로서 거짓된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지 김상용에게 박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왕은 대신들이 증거라고 제시한 것들 역시 경솔하여 채택할 게 없다며 "이 제사는 반드시 올해에 행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 제문은 짓지 말라"고 한다.

절의를 인정하는 사실상의 첫 관문인 치제(致祭)를 왕이 거부하자 신익성(申翊聖), 강석기(姜碩期), 김광환(金光煥)·광현(光炫)이 연달아 김상용의 사절을 주장하는 글을 올린다. 그 내용은 큰 변란을 겪은 국가가 급선무로 삼아야 하는 것은 충신을 포상하는 일인데, 그것은 앞으로의 의사(義士)를 길러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12] 그런데 김상용의 죽음이 사고사가 아니라 사절이라는 주장은 모두 그 측근에서 나왔다. 그들 각각은 조금씩 다른 표현을 쓰지만 대체로 의혹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다시 말해

11) 『인조실록』 15년(1637) 10월 28일.
12) 『인조실록』 15년(1637) 10월 28일. 여기서 신익성은 김상용의 동생 김상헌과 절친한 사이로 척화파의 핵심인사이고, 강석기의 며느리가 김상용의 손녀이므로 둘은 인척이다. 김광환·광현은 김상용의 아들들이다.

사절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사절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반론의 성격이 강한 것들이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 남초를 핀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했고 사실은 자폭하기 위해 불을 청한 것이다. 이것은 실수로 공초를 화약고에 던져 그로 인해 폭발이 일어나 죽은 사고사에 불과하다는 설에 대한 반론이다.[13]

ⓑ 옷을 종에게 벗어 준 것은 초혼에 쓰라는 의미로 자결 후를 계산한 것이다. 이것은 강도로 피난한 사대부 대부분이 그랬듯이 김상용 또한 고귀한 신분을 선호했던 적의 눈을 피하고자 종과 옷을 바꿔 살기를 도모하는 데 급급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한 반론이다. 종과 옷을 바꿔 입은 대신들이 비웃음거리가 된 세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 자결을 결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러가도록 미리 알렸으나 그들 역시 뜻을 같이 하겠다며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다. 이것은 자결이라면 함께 있던 많은 사람이 폭발과 함께 죽거나 다친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반론이다.

같은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이 있게 된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건 초기에 강도에서 올라온 장계(狀啓)에는 "김모(金某)가 불이 나 죽었다"라는 말과 함께 그의 명단이 다른 사망자 사이에 있었다.[14] 또 예조에서도 "김상용의 일을 강도유수는 불에 타서 죽었다고 했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분분했다"[15]며 당시 상황을 전한다. 이에 김상용 측근들은 왕이 그 죽음을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장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당시 장계를 올린 강도유수 윤이지(尹履之)와 그 아버지 윤방에게 공격의 화살을 보낸다.[16]

게다가 김상용의 두 아들이 이 사건을 종합 정리하여 제출한 상소는 왕을 설득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들은 "나는 이제 한 번 죽는 일이 있을

13) 江都 사건 이후 김상용의 후손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가문의 규칙으로 삼았는데, 10대가 지난 후에 피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임하필기』 권31 旬一編.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담배 불씨가 목숨을 앗아간 사건'으로 본 것이 아닐까.

14) 『인조실록』 16년(1638) 3월 25일.

15) 『인조실록』 15년(1637) 10월 28일.

16) 윤방에 대한 비방이 일자 윤씨 문중의 자제들이 김상용의 '자결'을 시샘해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 윤씨 문중의 사람들은 다음 장에서 다룰 속환녀 문제에도 연결된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뿐"이라고 한 아버지 김상용의 평소 발언을 '절의로 죽으려는 결심'과 연결시킨다. 또 담뱃불을 잘못 던졌다는 세간의 주장에 대해 아들들은 "아버지가 남초를 싫어한 것은 온 나라가 다 안다"고 대응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가 종에게 옷을 벗어 준 것은 자결할 뜻이 있었기 때문이고, "죽은 아비의 유체를 거의 10일 동안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자결이 맞다."고 주장한다. 자결이 아닌 실화에 의한 죽음이라 하더라도 화약고가 터진 마당에 유체를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해 유체를 찾지 못한 것이 곧 자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들은 또 성안 사람 중에 친족이 남문에 있다가 동시에 죽은 자가 있었는데, 울부짖으며 원망하기를, "어찌하여 혼자 죽지 않고 남도 같이 죽게 했는가"라고 한 말을 소개하며 자결의 근거로 삼았다. 이 또한 자결을 주장하는 논거로는 빈약해 보인다. 이에 왕은 김상용의 아들들에게 "경의 아버지 일은 같이 타 죽은 자가 매우 많으므로, 내가 이것을 의심하여 감히 가벼이 허락하지 못했다"고 한다.[17] 그 이후에도 인조는 "그날 같이 죽은 자가 매우 많으므로 명백하게 살피려 한 것이니, 이것은 실로 신중히 하려는 뜻"[18]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인조는, 그 죽음이 의도된 것이라면 현장에서 동시에 죽은 '의도되지 않은'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왕이 김상용의 '사절(死節)'을 쉽게 인정하지 못했던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인조의 조정에서 오랫동안 재상을 맡아온 인물이니만큼 국왕 나름의 평가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록에는 10년 전 정묘호란 당시 김상용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그때 왕은 강도로 피신하면서 김상용을 유도(留都) 대장으로 삼아 도성을 지키게 했다. 그런데 대장 김상용은 적병이 임진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 도성을 버리고 달아나는 바람에 도적이 횡행하며 여러 관청이 불타 버렸다.[19] 다른 기록에 의하면, 유도 재상 김상용이 어고(御庫) 및 병조·호조 등의 여러 창고에 불을 지르도록 명령하는 바람에 나라의 저장물이 모두 탕진되었다. 게다가 대장이 곧바로 강

17) 『인조실록』 15년(1637) 10월 28일;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1월 2일.
18) 『인조실록』 15년(1637) 11월 24일.
19) 『인조실록』 5년(1627) 2월 11일.

화로 달아나는 바람에 노량진 나루에 두었던 1천여 석의 양곡도 모두 흩어져 잃어버렸다.[20] 이에 강도에 있던 왕은 "김상용이 겁을 먹고 성을 빠져나감으로 해서 도성이 무너지게 되었으니 추고하라"는 영을 내린 것이다.[21] 왕도 인간인 이상 정묘호란 당시의 김상용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병자호란 당시 조정에서 벌어진 김상용 논쟁은 왕과 김상용 측근으로 나뉜다. 사절(死節)의 인정이 국가의 일이니만큼 사실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왕의 입장이라면, 김상용 측근에서는 왕이 공의(公議)를 가볍게 여긴다고 비난한다. 결국 1년여의 공방 끝에 김상용은 정려를 받게 되었고, 국가가 인정하는 치제(致祭)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정조조에 부조지전(不祧之典)의 영예를 받기까지 그에 대한 숭모 작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를 위한 사당이 건립되고 그를 배향한 서원이 사액의 대상이 되었으며, 시호가 내려지는 등, 이제 그는 의심할 바 없는 절대 충신으로 안착한다.[22]

2) 충절지사, 그 후의 담론과 문제

김상용 충절 프로젝트의 성공은 군신(君臣) 간의 힘겨루기에서 왕의 패배를 의미한다. 신하들은 언필칭 '군주가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主辱臣死]'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권신(權臣)을 무시한 군주가 욕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김상용이 충절지사로 등극하자 '방해자'들에 대한 공격이 개시되었다. 그것은 끝까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 왕을 제압하는 일과 '사고사'임을 주장한 자들을 응징하는 일이다.

---

20) 『조야기문』; 『續雜錄』 2 인조 5년(1627년) 2월 9일.

21) 『인조실록』 인조 5년(1627) 2월 12일. 이 부분을 서술에서 이이화는 김상용이 '도망갔다'라고 하지 않고 '강도로 달려갔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현대 사가들의 서술 방식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22) 1641년(인조 19) 강화의 충렬사, 1656년(효종 7) 건립되어 1663년(현종 4) 사액서원으로 승격된 양주의 石室書院에 위패 설치, 1671년(현종 12)에 사액서원으로 승격된 정주의 鳳鳴書院에 배향, 1673년(현종 14) 안면 옥동서원에 배향, 상주의 西山書院, 정평의 慕賢祠에 제향되었다. 강화에 세워진 김상용의 순절비는 인천시 기념물 제35호로 지정되어 있다.

> 전하께서는 김상용에게 사제(賜祭)하는 것을 유독 주저하시어 온당치 못한 거조가 많이 있었고, 뒤늦게 통상적인 전례를 행하는 것마저도 끝까지 흔쾌하게 윤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윤방(尹昉) 등에 대해서는 그 죄와 과실이 극히 중하여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자인데도 곡진히 비호하며 오랫동안 공의를 어기셨습니다. 상벌이 이와 같은데, 어떻게 권장되고 징계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심이 복종하지 않는 한 가지 일입니다.
>
> 전하께서는 훌륭한 덕으로 중흥을 이루셨으나 십수 년 동안 세 번 파천하셨고 종묘와 조정이 위기를 맞고 모욕을 당하여 거의 무너질 지경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화란은 반드시 이를 초래한 원인이 있으니, 어찌 단지 운수의 탓으로 돌리고 그 근본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큰 근본을 확립하지 않고 다스림의 요체를 살피지 않은 채, 겉치레를 절대적인 일로 여기고 가렴주구로 충성을 다했다 여기십니다. 게다가 진실함은 신뢰받지 못하고 단호한 위엄은 행해지지 않으며 사은(私恩)에 휘둘리고 형정(刑政)은 구차하니, 망하게 되는 것도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23]

핵심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그들의 주장을 재구성해보자. 왕이 온당치 못한 거조를 보이며 공의를 어기니 인심이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 왕위에 오른 지 십 수 년 동안 세 차례나 파천하는 수모를 겪었고, 종묘와 조정은 모욕을 당해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다. 근본이 확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겉치레에 빠져있고 은애는 사사롭고 형정은 구차하여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신하의 발언은 권력이 전도된 느낌이 들도록 한다. 반정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인조에게 인심(人心)이니 공의(公議)니 하는 개념보다 더 큰 협박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상용 측근들의 상소가 있던 날, 윤방은 위리 안치되었고, 윤신지는 관작을 삭탈당했다.

김상용 측근들이 문제로 삼는 대상은 강도유수의 측근들인 '윤씨 무리'다. 그들에 의하면, 윤이지는 김상용의 죽음을 실화(失火)로 무고한 장본인이고[24], "남의 훌륭한 행위를 시기하여 엄폐하고 헐뜯는 무리 때문에"[25] 김상용의 죽음에 대한 시비가 엇갈렸다. 그들은 '성(城)을 적에게 바친 역적' 윤방

23) 『승정원일기』 인조 16년(1638) 5월 5일.
24) 『인조실록』 15년(1637) 2월 4일.
25) 『인조실록』 15년(1637) 10월 28일.

을 다시 응징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좌의정 최명길이 반대하며 나섰다. 최명길에 의하면, 윤방은 덕과 도량을 갖춘 신하로 칭송을 받아온 데다 그 공적 또한 적지 않다. 하지만 강도의 책임을 물어 파직과 삭탈관직까지 이미 당한 몸인데, 80세의 늙은 신하에게 트집을 잡는 것이 1년이 다되도록 그치지 않고 더욱 과격해지고 있다. 이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로 전후의 조정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26] 여기서 언급된 '윤씨 무리'는 다음 장에 나올 이혼의 위기에 처한 장유의 며느리 윤씨의 친족들이다.

김상용의 사람들은 밖으로는 그 사절(死節)을 부정한 자들을 공격하면서 안으로는 김상용 숭모 작업을 전개시킨다. 그 방법은 사건의 재구성과 기억의 발명인데, 김상용의 동생 김상헌(1570-1652)과 사위 장유(1587-1638) 등이 주도하고 후손 김창협(1651-1708)이 이어간다. 이들에 의하면 김상용은 원래부터 나라를 걱정하는 절대 충신이었다. 김상헌은 죽기 직전의 형 김상용이 남긴 말을 발명해낸다. 즉 "주상은 포위되어 안위(安危)를 알 수 없고 종묘사직과 원손(元孫)은 모두 강도에 와 있다. 만일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죽음이 있을 뿐 어찌 구차스럽게 살겠는가"라고 하고, 이어서 "아아! 공이 품고 있던 충성과 절개여, 만고토록 길이 해와 별이 되리라"라고 한다.[27] 그리고 "궁벽진 촌구석의 사람들까지도 모두 선생의 일을 듣고는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앞다투어 전하면서 고무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28]고 한다.

김상헌의 논조를 이어받아 18세기의 황경원은 사실과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즉 묘사(廟社)의 신주를 받들고 빈궁·원손을 수행해 강화도에 피난했다가 이듬해 성이 함락되자 성의 남문루에 있던 화약에 불을 지르고 순절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외로운 남한산성 40일간 포위되니, 누가 원손을 호종하였나 노성한 이분이셨네."라고 한다.[29] 다시 말하지만 김상용은 아무런 직임이 없이 강도로 피난을 갔고, 또 화약고를 터트린 것은 강도 함락 4일 전에 일어났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26) 『인조실록』 16년(1638) 8월 3일; 『인조실록』 15년(1637) 8월 15일.
27) 김상헌, 「伯氏議政府右議政仙源神道碑銘」, 『청음집』 권26.
28) 김상헌, 「伯氏右議政仙源先生行狀」, 『청음집』 권37.
29) 황경원, 「祭文忠公金尙容祠文」, 『江漢集』 권22.

한편 김상용의 과거 사실 중 선양에 불필요한 것들은 재구성이 필요했다. 정묘호란 당시 유도대장에 임명된 김상용이 도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 추고를 당한 사실은 각색되어야 했다. 동생 김상헌은 "상께서 강화도로 행차하고 공에게 도성에 남아서 지키게 했는데, 호령이 명백하여 성안이 숙연해졌다"[30] 고 썼다. 사위 장유는 "정묘년 변란 때 유도대장을 맡아 훌륭하게 책임을 완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31]고 기록했다. 김상용의 종증손인 김창협은 『강도충렬록』을 지어 김상용의 죽음을 환원 불가능한 지식체계로 정립시킨다.

> 남문에 어린 충정 북두성에 뻗치니,
> 우리 가문 승상이 큰 이름 남기셨지.
> 산천을 철옹성 요새라고 하지 마소,
> 오직 이 누각 하나 천지를 받쳤다오.[32]
>
> 紫氣南門亘斗牛, 吾家丞相大名留.
> 山河莫說金湯險, 撐拄乾坤只此樓.

남문루의 사건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처럼 당시의 정황과 매우 다른 모습으로 각색되어 간다. 이와 함께 김상용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죽은 자들이 서서히 등장하는데, 그들의 죽음도 사절(死節)이라는 것이다. 당시 남문루에서 의도하지 않게 죽은 자들의 숫자를 김상헌은 8, 9명이라고 했고, 인조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들에 대한 충절 요구는 힘 있는 후손들을 중심으로 공론화되는데, 조상이 충절지사로 인정되면 후손인 자신들에게 이익과 영예가 보장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 별좌 홍처준은 강도에서 김상용 곁에 있다가 죽은 아비 참의 홍명형(洪命亨)에게 정표를 내릴 것을 요구한다. 그에 의하면 홍명형은 강도에서 절의를 지키다 죽은 김상용과 뜻을 함께 한 신하로 창졸간에 죽은 게 아니라 평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의 아비는 이미

30) 김상헌, 「伯氏議政府右議政仙源神道碑銘」, 『청음집』 권26.
31) 장유, 「故右議政楓溪金公自撰墓銘後敍」, 『계곡집』 권7.
32) 김창협, 「남문루의 감회」, 『농암집』 권6.

증직의 은전을 받았지만 김상용이 받은 정려의 은전을 요구한다.[33] 김수남(金秀南)도 '강도에서 절개를 지켜 죽은 사람들'의 대열에 합세하며 송준길의 건의로 동부승지에 추증되었고,[34] 송시열의 건의로 정려되었다.[35] 홍명형과 김수남은 강화도 충렬사에 추가로 배향되었다.[36] 정조 3년(1779)에는 홍명형에게 시호가 내려졌다. 참판 김반의 아들인 생원 김익겸(金益兼)과 참판 권진기의 아들 별좌 권순장(權順長)에게도 관직 추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곁에 있다 죽은 김상용의 손자 김수전(金壽全)에게도 정문을 내렸는데, 예조판서 민진후의 발의에 의한 것이다. 당시 13세의 김수전이 '할아버지를 따라 죽겠다'고 했다며, 그의 죽음은 어린 나이에 국사에 참여한 노나라 왕기(汪錡)에 비유되었다. 즉 동자(童子) 왕기가 나라 일에 죽은 것을 성인(聖人)이 칭찬했다면서 정표를 요구한다.[37]

이들의 죽음이 과도하게 의미화되면서 그 죽음에 대한 조그마한 의문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로 흘렀다. 예컨대 윤증은 김익겸의 죽음을 "반드시 죽어야 할 의(義)가 없었던" 것이라고 하는데, 의도된 죽음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송시열은 "이치를 해치고 교화를 손상시키는 말"이라며 공격한다.[38] 사건이 난 지 1백 년도 훨씬 더 지났지만 김상용의 후손은 대대로 특혜를 받는 신분이 되었고, 김익겸, 권순장 등의 손자들도 왕의 특별한 배려로 벼슬을 받았다.[39]

충신들을 통한 이익 나누기는 가문과 당파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지역 이기주의가 가세하는데, 지역서원들이 김상용 배향을 요청했고, 이미 배향된 서원에서는 사액(賜額)을 요구했다. 영조 2년(1726)에 김상헌과 김상용을 배향한 서산서원에 사액을 요청한 상주(尙州)의 유학(幼學) 집단은 그들을 이렇게 의미화한다.

---

33) 『승정원일기』 인조 18년(1640) 5월 21일.
34) 『효종실록』 8년(1657) 12월 4일.
35) 『숙종실록』 7년(1681) 1년 14일.
36) 『숙종실록』 39년(1713) 2월 26일.
37) 『숙종실록』 30년(1704) 3월 15일.
38) 송시열, 「辨訾毁牛溪之謗仍白先誣疏」, 『송자대전』 권20.
39) 『영조실록』 30년(1754) 6월 12일.

> 두 선정신의 올바른 도학(道學)과 뚜렷한 절의(節義)는 진실로 역사책에 분명하게 실려 있어 온 세상에 소문이 났으니, 굳이 신들이 열거하여 아뢰지 않더라도 성명께서도 이미 환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탁월한 덕성은 비유하자면 태산북두와 같은 터라 먼 후대에도 소문을 듣고 의리를 사모하기에 충분하니, 선비의 반열에 있는 자는 모두 그분들이 남긴 은택에 흠뻑 젖어 제사 지내는 곳에 표창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40]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상용의 죽음이 과연 이후의 주장에 부합하는가는 차치하더라도, 그런 죽음을 충절을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정약용은 충신론에서 "전공(戰功.)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표창해 주면 되고, 힘써 싸우다가 죽은 사람은 구휼하여 주면 된다. 그러나 지혜도 없고 힘도 약하여 적에게 사로잡혀 죽은 사람은 취할 것이 뭐 있겠는가"라고 한다. 충신의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41]

김상용이 충절지사가 되는 과정을 보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화약고에 불을 던진 행위와 절의(節義)에 대한 정의(定義)의 문제다. 먼저 당시의 전쟁에서 화약은 적군을 위협하고 아군을 보호하는 절대적인 무기였다. 선조는 "화약이 없다면 비록 10만 개의 대장군전(大將軍箭)이 있다 한들 무엇 하겠는가"[42]라고 했고, 광해군도 "적을 막는 데 쓰이는 것으로는 화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43]고 했다. 인조 초기에는 화약 장만이 너무 어렵다며 특별한 조치를 처해 달라는 요청이 곳곳에서 쇄도하는데,[44] 화약은 병가(兵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바로, 온갖 기술을 배운 용사(勇士)들이 구름처럼 모였다고 하더라도 화약이 없으면 결코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45] 전란이 나자 조정에서는 군기시가 보유하던 화약 4천근을 강도로 운반토록 한다.[46] 이 화약을

40) 『영조실록』 2년(1726) 3월 20일.
41) 정약용, 「충신론」, 『다산시문집』 권11.
42) 『선조실록』 26년(1594) 11월 21일.
43) 『광해군일기』 7년(1615) 8월 17일.
44) 『인조실록』 2년(1624) 3월 10일.
45) 『선조실록』 26년(1593) 9월 8일.
46) 『인조실록』 14년(1636) 11월 21일.

김상용이 일신의 죽음을 위해 써버린 것이다. 실화(失火)가 아니라면 오히려 그의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어쩌면 강화도 함락 며칠 전에 김상용이 터트린 화약이 전쟁을 패배로 이끈 결정적인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가능한데, 임진왜란 때의 사례를 통해서이다.[47]

하지만 그의 사위 장유는 김상용의 죽음이 의도된 것이었음을 논증하는 데 몰두한다. 즉 "공이 이윽고 화약더미에 불을 붙이자 삽시간에 불기둥이 하늘로 솟구치면서 누옥(樓屋)까지 모두 말려 올라갔는데 미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 모두가 공과 죽음을 함께 했다"[48]는 것이다. 김창협도 "망루에 부질없이 쌓여 있던 화약 무기, 충신이 공 세우기 편하게 하였어라"[49] 라며 종증조 김상용의 행위를 미화한다. 화약을 없애버린 김상용의 행위는 사절(死節)과 사고사(事故死)를 따지는 따위의 것에 앞서 국가의 안위와 관련하여 다루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다.

김상용 논쟁이 놓친 또 하나의 문제는 절(節)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행위의 주체성'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정의되는가 하는 것이다. 무엇이 죽음으로 의리를 지킨 행위인지, 그리고 자신의 절의를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도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를 물어야 한다. '한번 죽음'에 일생의 의미를 건 것이 노(老) 대신의 뜻이라면 앞길이 창창한 어리고 젊은 사람들을 자신의 '의거(義擧)'에 동원한 상황도 그의 뜻인가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상용의 죽음을 의미화하는 이후의 정치사상적 맥락을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충신을 만드는 이러한 메커니즘은 속환녀를 발라내는 데도 유효한 기능을 한다.

---

47) 『선조실록』 31년(1598) 10월 8일. 임진왜란 시 군문도감(軍門都監)의 보고에 의하면 명나라 장수 동제독(董提督)이 진주 및 사천에 진격하자 왜적들이 싸우지도 않고 흩어져 달아나는 상황이었다. 그때 명나라 장수 모유격(茅遊擊)의 진영에서 실수로 화약에 불이 나는 사고가 났는데, 이를 본 왜적이 도망을 멈추고 다시 좌우로 공격해 들어와 덮쳐 사망한 아군의 숫자가 거의 7천-8천 명이나 되었다.

48) 장유, 「故右議政楓溪金公自撰墓銘後敍」, 『계곡집』 권7.

49) 김창협, 「남문루의 감회」, 『농암집』 권6. "譙樓火具空山積, 却與忠臣取義便."

3. 조선후기 정절의 정치학

1) 개념으로 환원된 여성, 속환녀

전란 때 있었던 개인들의 처신이 전란 후의 정국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전란을 수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내야 할 시대적 과제 앞에서 전란 중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개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전란에 의한 피해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에서 본 바 충절이 남성의 행위를 평가하는 개념이었다면 여기서 다룰 여성의 행위는 정절의 개념으로 평가되었다.

청군에게 잡혀간 지 3개월이 지나자 피로인(被虜人) 속환(贖還) 문제가 대두되었다. 1537년 4월, 당시의 우의정 최명길(1586-1647)은 현 시점에서 이 문제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며 포로들의 상황을 왕에게 보고한다. 원래는 싼값으로도 속환해 올 수 있었는데 가족의 안위(安危)가 다급해진 사람들이 값을 묻지 않고 사 오는 바람에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가난한 백성은 끝내 속환할 길이 없게 되므로 왕이 나서서 속환 값을 법으로 정하고, 더 이상의 값을 치르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최명길은 "왕이란 백성에 대해 귀천빈부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50]

피로인이란 그 자체 비참한 처지지만 성폭력에 노출된 여자들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포로로 잡혀간 부녀들이 청군(淸軍)의 손아귀에서 도망쳐 나오면 조선의 강포한 자들이 다시 잡아가고, 진휼청에 배급을 받으러 간 사족 부녀들이 납치를 당한다는 보고가 올라온다.[51] 또 무뢰한이 집단으로 나루나 요로를 지키고 있다가 사족 부녀가 도망쳐 오면 끌고 가 강간한 뒤 데리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52] 이에 나라에서는 곳곳의 요로와 나루터에 담당관을 파견하여 도망쳐 온 부녀들을 각별히 호송토록 하고, 부녀를 납

50) 『인조실록』 15년(1637) 4월 21일.
51) 『인조실록』 15년(1637) 3월 6일.
52) 『승정원일기』 인조 16년(1638) 3월 14일.

치한 자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정범(正犯)은 효시하고 고발자는 논상(論賞)하며, 알고도 숨긴 자는 논죄토록 했다.[53]

인조는 좌의정 최명길을 청(淸)의 수도 심양(瀋陽)으로 보내 포로 속환을 추진토록 했다. 1637년 9월 중순에 심양으로 출발한 최명길이 2개월의 협상 끝에 780인을 귀환시킬 수 있었다.[54] 그리고 다시 2개월 후에는 성첩(城堞)을 지킨 사람들의 처자 66인이 속환되었다.[55] 끌려간 지 만 1년 만이다. 한편 김상용의 죽음을 놓고 왕과 척화파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상용의 사위이자 우의정을 지낸 장유는 외아들 장선징(1614-1678)의 이혼을 허락해달라는 단자를 예조에 올린다. 사연인즉슨 며느리가 적에게 잡혀갔다가 속환되었는데, 그대로 배필로 삼아 함께 조상 제사를 받들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56]

예조에서는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족의 부녀자가 한 둘이 아니므로 조정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피차 난처함이 없을 것이라 한다. 좌의정 최명길은 지난해에 나온 왕의 전교를 언급하며 이혼은 국법으로 금지된 사항임을 주지시켰다. 그는 말한다.

> 만약 이혼해도 된다는 명이 있게 되면 속환을 못할 사람들이 생기고, 많은 부녀자들을 영원히 이역의 귀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소원을 이루고 백 집에서 원망을 품는다면 어찌 화기(和氣)가 상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몸을 더럽혔다는 누명을 뒤집어쓴 경우도 많은데, 사로잡혀 간 부녀들 모두가 몸을 더럽혔다고 할 수 없습니다.[57]

최명길의 '한 사람의 소원이 백 집의 원망이 된다'는 표현은 정승을 지낸데다 봉림대군의 장인으로 '나라 어른'의 자리에 있는 장유의 사회의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속환 부녀의 보호를 주장한 최명길은 그녀들이 적에

53) 『인조실록』 15년(1637) 3월 6일.
54) 『인조실록』 15년(1637) 11월 29일.
55) 『인조실록』 16년(1638) 1월 22일.
56) 『인조실록』 16년(1638) 3월 11일.
57) 『인조실록』 16년(1638) 3월 11일.

게 정조를 잃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 예를 들며 재삼 강조한다. 사실 생존의 문제가 더 긴박했던 상황을 목도한 최명길에게 정조를 잃었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을 테지만, '부녀 정조'를 강조하는 사대부들의 논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편 최명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속환 부녀는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데,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 사신은 논한다. 사로잡혀 갔던 부녀들은 비록 그녀들의 본심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변을 만나 죽지 않았으니, 절의를 잃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미 절개를 잃었으면 남편의 집과는 의리가 이미 끊어진 것이니, 억지로 다시 합하게 해서 사대부의 가풍을 더럽힐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 선정(先正)이 말하기를 "절의를 잃은 사람과 짝이 되면 이는 자신도 절의를 잃는 것이다"라고 했다. 절의를 잃은 부인을 다시 취해 부모를 섬기고 종사(宗祀)를 받들며 자손을 낳고 가세를 잇는다면,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아, 백 년 동안 내려온 나라의 풍속을 무너뜨리고, 삼한(三韓)을 오랑캐로 만든 자는 최명길이다. 통분함을 금할 수 있겠는가.[58]

'사신의 논평'이라는 익명의 주장은 척화파의 입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척화파가 대세를 이루게 되자 속환 부녀의 이혼을 허락해달라는 사대부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딸의 아버지들은 이 부당한 처사에 울분을 터트렸다. 전 승지 한이겸(韓履謙)은 딸이 사로잡혀 갔다가 속환되었는데, 사위가 다시 장가를 들려고 하자 노복으로 하여금 격쟁하여 원통함을 호소하게 했다.[59] 한이겸은 인조비 인열왕후(1594-1635)의 아버지 한준겸의 사촌이다.

척화파를 두둔하는 일군의 대신들은 왕에게 8조목을 진달하는데, 그 안에는 강도에서 절의를 지켜 죽은 신하들을 정표할 것과 잡혀갔다 돌아온 부녀와의 이혼을 허락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들은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烈女)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 경전에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어서 오랑캐에게 잡혀간 부녀자들을 모두 받아들이게 한 것이 비록 홀아비와 홀어미를 구휼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예의를 밝혀야 할 국가의 도에는 대단한 흠이 된다고 한다.[60]

---

58) 『인조실록』 16년(1638) 3월 11일.
59) 『인조실록』 16년(1638) 3월 11일.

> [조문수가 말하기를] 일전에 부녀가 잡혀갔던 사대부 집안이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조정에서 이미 법제로 정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부부는 오륜의 하나로 인륜에서 매우 중대하므로 비록 작은 과실이 있더라도 버려서는 안됩니다만 금수에게 더럽혀진 사람이 어떻게 제사를 받들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양사의 장관이 입계하여 쟁론해야 합니다. 예의지국이라는 이름을 얻은 나라가 하루아침에 변란을 겪고서 이런 거조가 있다면 이륜(彝倫)이 끊어질 것입니다. 성상께서 십분 삼가고 유념하시어 강상을 일으켜 세우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61]

이에 왕은 부녀자들이 좋아서 스스로 따라간 게 아니라 힘이 없어 죽지 못해 끌려간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런데도 주장자들은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국가의 체면과 법도를 세우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한다. 누가 보더라도 국가의 체면과 법도가 피로(被擄) 부녀와의 이혼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와중에 전쟁의 휴유증은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소가 몰살하는 등 이변이 속출하여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있고 유언비어가 들끓었다. 봄 농사철이 다가왔는데 가뭄의 징조는 심하고, 소 대신 사람이 논밭을 갈아야하는 상황에서 농사를 그만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62] 산적한 정치 사회적 현안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피로 부녀들에게 도덕적 책임을 들이대는 것은 아무리 그 시대의 맥락이 있다한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며느리를 아들과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던 장유는 소(疏)를 올린 지 6일 만에 유명을 달리한다.[63] 이에 장선징과 그 아내 윤씨의 이혼 문제는 없던 일로 되는 듯 했다. 그런데 이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장유의 부인 김씨가 아들 부부의 이혼을 허락해달라는 소를 다시 올림으로써 이 사건은 역사 무대에 다시 서게 된다. 장유의 행장에 묘사된 부인 김씨는 '어진 덕으로 온 집안의 칭송을 받았고 그 덕은 강도의 변에서 의리를 지켜 뜨거운 불길 속으로 몸을 던진 아버지 김상용에서 유래한다'는 것이다.[64] 여

60) 『승정원일기』 인조 16년(1638) 4월 22일.
61) 『승정원일기』 인조 16년(1638) 5월 21일.
62) 『인조실록』 16년(1638) 2월 23일.
63) 『인조실록』 16년(1638) 3월 17일.
64) 정두경, 「右相張公行狀」, 『동명집』 권18.

기서 남성의 충절과 여성의 정절에 관련된 두 사건이 사실은 동일한 집단이 주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씨에 의하면, 아들의 이혼을 다시 주장하는 이유는 죽은 남편의 유언이기도 하지만 "며느리의 타고난 성질이 못되어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또 편치 않은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65] 이에 영의정 홍서봉은 죽은 남편이 조정의 윤허를 받지 못하자 칠거지악을 내세워 뜻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며 비판한다.[66] 반면에 우의정 강석기는 부인에게 칠거지악이 있다면 헤어지게 하는 게 옳다고 한다.[67] 이런 가운데 돌아온 부녀와의 이혼 여부는 개별 가정의 선택에 맡기자는 의견과 이혼의 법이 한번 터지면 반목하던 부부들이 악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왕은 이혼의 법은 그대로 유지하되 장선징이 훈신의 독자라는 점을 들어 그에게 특례로 이혼을 허락한다.[68] 결국 장선징은 속환녀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어 '오염된' 며느리에게 조상 제사를 맡길 수 없다던 부모의 염원을 이루어낸다. 장선징은 효종비 인선왕후(1618-1674)의 오빠다.

장선징의 아내 윤씨는 윤종지(尹宗之)의 장녀다. 윤종지는 윤근수의 손자로 1남 4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장녀는 장선징, 차녀는 심지원(沈之源), 3녀는 윤돈(尹敦), 4녀는 이제태(李齊泰)와 혼인했다. 그의 둘째 사위 심지원은 영의정을 지냈고 그 아들 심익현은 효종의 차녀 숙명공주의 부마가 되었다.[69] 윤씨는 20대에 이미 이혼하여 장선징과 인연이 끊어졌지만, 그녀에게 숙명공주는 친정으로는 생질부이고 시집으로는 생질녀가 된다. 즉 윤씨에게 숙명공주는 여동생의 며느리이자 시누이의 딸이다. 숙명공주에게 윤씨는 시이모이자 외숙모가 된다. 한편 윤씨의 남동생 윤타(尹㠓, 1624-1682)는 누이들과의 우애가 돈독했다고 한다.[70] 이처럼 윤씨 집안도 왕실과 혼맥으로 이어진 최상층 집단이었다. 김상용의 죽음을 사고사로 보고한 강도유수 윤이지(尹履

65) 『인조실록』 18년(1640) 9월 22일.
66) 강석기, 「張善澂妻尹氏離異議」, 『月塘集』 권3; 『인조실록』 18년(1640) 9월 22일.
67) 홍서봉, 「張善澂改娶議」, 『鶴谷集』 권7; 『인조실록』 18년(1640) 9월 22일.
68) 『인조실록』 18년(1640) 9월 22일.
69) 허목, 「贈吏曹參判權公墓碣」, 『기언별집』 권23.
70) 박필주, 「司圃署別檢尹公墓誌銘」, 『黎湖集』 권28.

之)는 장선징의 아내 윤씨의 재당숙이다.

환향한 부녀와의 이혼이 국법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장유와 부인 김씨가 식자들의 지탄을 받으면서까지 며느리를 내치려고 한 것은 두 집안의 갈등이 큰 몫을 한 것 같다. 김상용의 죽음을 '시기 질투하고 무함하는 윤씨 무리'가 바로 며느리의 친족들이기 때문이다. 윤씨의 시어머니 김씨는 아들 부부의 이혼을 주장하며 '편치 않은 사정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집안 간의 불편한 관계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윤씨와 이혼한 장선징은 경주 이씨 통덕랑 이승효의 딸과 재혼하여 2녀를 낳았다.[71] 장녀는 이관명(李觀命, 1661-1733)과 혼인했고 차녀는 김진서(金鎭瑞)와 혼인했다. 이관명은 자신보다 먼저 죽은 아내 장씨를 위한 제문을 남겼는데, 장유와 장선징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72] 장선징의 둘째 사위 김진서는 조부가 김익겸으로 김상용과 함께 있다가 화약 폭발로 죽은 사람이다. 김익겸의 아들이자 김진서의 부친인 김만기는 숙종비 인경왕후의 아버지이므로 장선징의 사위 김진서는 인경왕후와 남매간이다. 외손인 유숙기는 장선징의 행장에서 "모든 가족이 강화로 피난을 갔는데, 공[장선징]은 부인 김씨[어머니]를 보호하여 병화의 참화 중에도 온전히 보전될 수 있었다"[73]고 썼다. 그 아내 윤씨만 적들에게 끌려간 것임을 알 수 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죽은 여자들과 살아 돌아온 여자들에 대한 17세기의 정치문화적 담론은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한다. 그녀들을 보면서 산 것이 죽은 것보다 낫고, 살아 돌아온 것이 돌아오지 못한 자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전후(戰後) 수습을 담당한 예조 좌랑 허박(許博)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한다.

> 아, 이번 병화가 발생했을 때 죽은 자가 한없이 많고 포로로 잡혀 간 자도 한

71) 박필주, 「豊陽君張公墓表」, 『黎湖集』 권25; 정두경, 「谿谷張相公墓誌」, 『동명집』 권18.
72) 이관명, 「祭亡室德水張氏文」, 『屛山集』 권15. "당신 집안은 대대로 옛날 마황후나 등황후에 비견될 정도로 훌륭한 가문인 데다, 조부[장유]의 문장과 덕업이나 부친[장선징]의 명성과 절의는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소."
73) 유숙기, 「禮曹判書杜谷張公行狀」, 『兼山集』 권15.

> 이 없는데, 인지상정으로 말한다면 비록 포로로 잡혀 간 것이 죽은 것보다 낫지만, 신의 어리석은 견해로는 포로로 잡혀 간 자들이 화기(和氣)를 손상하는 것은 사망의 재앙보다 더 심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망한 자는 그 몸이 이미 변화하여 원망하는 지각이 사라졌고 비록 그들 부자나 형제의 지극한 정이라 하더라도 세월이 이미 오래되면 슬픔을 잊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 간 자들의 경우는 억류되어 고초를 겪으면서 죽음에서 빠져나오기에도 겨를이 없어 고통에 울부짖으며 원망하는 기운이 하늘을 채웁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포로들의 가족들은 골육과 한 번 헤어진 뒤로 다른 세상 사람이 된 것과 같아 그들의 생사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74]

남성 허박의 인식도 여기까지다. 여자는 돌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애태우면서, 동시에 돌아가는 게 옳은지 아닌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임을 그는 알고 있을까. 전란이 끝나자 국가와 남성 사대부들은 전란 중에 일어난 여성들의 행위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난리를 만나 죽은 여성들은 열녀가 되어 국가의 은전(恩典)을 받게 되었지만, 전쟁 포로가 되었다가 살아서 돌아온 여성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환향 부녀 담론은 기억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데, 남아 있는 기록들은 거의 국가・남성・가부장의 기억이다.

2) 가부장들의 욕망과 자기모순

잡혀갔다 돌아온 부녀와의 이혼을 허락해달라는 사족들의 요구는 인조 사후, 효종의 즉위와 함께 다시 점화되었다. 인조가 법으로 금지시키며 끝까지 허락하지 않으려고 했던 시점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이다. 사헌부의 발의로 제기된 이 주장은 집의(執義) 송준길(1606-1672)의 작품이다.

> 변란 때 실행(失行)한 사족 부녀에 대해 그 당시 정승의 건의에 따라 그 가장(家長)으로 하여금 도로 거두어들이고 개취하지 못하도록 한 조처는 풍속을 매우 손상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정자(程子)가 '아내를 얻는 것은 자신의 짝을 구하기 위함이니, 만약 실절(失節)한 사람을 아내로 맞아 자신의 짝으로 삼는다면 이는

74) 『승정원일기』 인조 15년(1637) 9월 16일.

> 이미 자신도 실절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만세토록 바꿀 수 없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이 법은 어찌 정자의 훈계와 크게 어긋나고 예의에도 심히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비록 문약(文弱)하지만 예의와 명교(名敎)는 찬란하여 중국에 못지않으니, 국가가 유지되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얼마 되지 않는 예의마저 무너뜨리고 내버렸으니, 지식인들은 지극히 한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부(士夫)의 가풍이 날로 파괴되고 규문에 부끄러운 일이 많아 간혹 차마 말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면 이 법이 그 빌미가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풍교(風敎)에 관계된 일이어서 소홀히 할 수 없으니, 개취하고자 하는 가장에게는 개취를 허락하소서.75)

효종은 송준길의 손을 들어주며 속환 부녀와의 이혼을 모든 사대부에게 허락했다. 잡혀갔다고 다 몸을 더럽힌 것은 아니며 또 끌려간 것은 행실을 잃은 것이 될 수 없다는 주장들이 있었지만, 송준길에 의해 '돌아온 부녀들'은 '실행녀(失行女)'로 공식화되었다. 송준길의 이 일은 역사적인 '업적'으로 기록되었다. 그의 묘지문에서 송시열은 "직언을 구하는 성상의 뜻에 따라 소를 올리고, 또 노변(虜變) 때 실행(失行)한 부녀는 그 남편이 이혼하고 다시 장가들 수 있도록 청했다"76) 라고 썼다. 그런데 이 '업적'이 사실은 송시열의 구상이었다. 김상헌의 손자 김수흥에게 보낸 편지에서 송시열은 환향 부녀와의 이혼을 허락하라는 제안은 사실 자신이 발의한 것이라고 한다. 즉 잡혀갔던 부녀의 일을 다시 개정하지 않을 수 없어 헌부에 소속된 동춘(同春)에게 부탁하여 계를 올리도록 하여 윤허를 받은 것이다. 여기서 송시열은 "이혼하고 새로 개취(改娶)하게 하니, 정자(程子)의 훈계가 시행되고, 강상(綱常)이 밝아졌던 것"이라고 한다.77)

송준길과 송시열은 서인의 핵심 인사로 김상헌의 척화론을 계승하면서 환향 부녀의 이혼을 합법화한 자들이다. 효종이 즉위하자 송시열은 이른바 기축봉사(己丑封事)를 올리는데, 그 가운데는 장선징의 아들 장훤이 '실절한 부인'의 소생임을 상기시키는 내용이 있다.

---

75) 송준길, 「啓辭」, 『동춘당집』 권8; 『효종실록』 즉위년(1649) 11월 21일.
76) 송시열, 「묘지문」, 『동춘당집별집』 권9.
77) 송시열, 「答金起之」, 『송자대전』 권53.

> 신은 또 상고하건대, 정자(程子)가 이르기를 "실절(失節)한 여자를 취하여 배필로 삼으면 이는 벌써 자신이 실절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정축년 변란 초에 실절한 부인을 그 남편으로 하여금 버리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실절을 가르친 것입니다. 법을 의롭게 제정했더라도 오히려 악용될까 걱정인데,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니 어찌 백성을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듣건대 장선징의 집에 실절한 부인의 소생이 있는데, 상신(相臣)이 그와 혼인을 의논했다 하니, 추잡함이 막심합니다. 대신이 이와 같기 때문에 조정이 날로 격하되고, 임금의 위세가 날로 강하되니, 매우 두렵습니다.[78]

여기서 '실절한 부인'이란 장선징의 아내 윤씨를 가리킨다. 10여 년 전 이미 도태시킨 속환녀를 끝까지 추격하고 있는 형상이다. 그런데 그 칼날은 윤씨가 남겨두고 떠난 아들 장훤을 향하고 있다. 알다시피 장훤은 장유의 손자이자 김상용의 외증손자이며 효종의 처조카이기도 한, 당대 최상층 집안의 일원이다. 정사호의 신도비명에 의하면 장훤은 정현원(鄭玄源)의 딸과 혼인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장훤 아내의 조부는 정사호(1553-1616)이고 외조부는 이정귀(1564-1635)다.[79] 이 혼인이 바로 송시열의 조롱을 받은 '추잡함이 막심한 상신(相臣)'의 그 혼인인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실행녀'의 아들 장훤과의 혼인은 상대 가문에게 누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다. 장선징의 행장에는 아들 장훤과 혼인한 사돈 집안을 숨기어 "모관모지녀(某官某之女)"로 기록하고 있는 데서 사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80] 당대 가장 파워풀한 정객 송시열의 주도로 속환녀에 대한 모욕은 자식에게 옮겨갔다.

속환 부녀를 공론화한 조부 장유의 발의가 있은 지 30여 년, 손자 장훤(張愃)이 탄핵을 받게 되었다. 정언 이선(李選)은 상소를 통해 "장훤은 중한 허물이 있어 의관(衣冠)의 반열에 끼워줄 수 없다"고 하고, 장훤의 허물을 알고도 벼슬에 앉힌 이조 관원를 추고할 것을 요청했다.[81] 현종이 재상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논의하자, 우의정 정치화는 실행(失行)한 자의 자손이 사람 축에

78) 송시열, 「己丑封事」, 『송자대전』 권5.
79) 정사호, 「神道碑銘」, 『禾谷集』 권4.
80) 兪肅基, 「禮曹判書杜谷張公行狀」, 『兼山集』 권15. "一男愃官郡守. 二女長適左議政李觀命, 次適僉正金鎭瑞. (…) 郡守娶某官某之女, 無子. 以再從弟, 楔之第三子震煥爲後."
81) 『현종실록』 8년(1667) 7월 6일.

끼지 못하는 풍속 때문에 호란 때 속환된 부녀의 자손에게 사로(仕路)를 허통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호조판서 김수흥은 장훤의 경우는 좀 다르다며 옹호하고 나섰다.

> 장훤의 일은 개가한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훤의 생모는 이미 이혼했고 그는 계모의 자식이 되었으며, 또한 계모의 아버지를 외할아버지로 써 넣었으니 생모의 허물이 장훤에게는 미치지 않을 듯합니다.[82]

그러자 왕은 속환한 부녀는 개가녀와는 다르기 때문에 청현직이 아닌 일반 관직에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사론(士論)도 장훤이 쓸 만한 인재라고 한다면 9품의 하급 관리직을 놓고 논핵하는 것은 지나치게 각박한 처사라고 한다. 하지만 김수흥이 장훤을 계모의 자식이라고 하고, 생모와는 인연이 끊어졌다고 말한 것은 이치에 어긋나고 윤리를 해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83] 국왕 현종에게 장훤은 외사촌이지만 '부녀 실행'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었다.

이러한 논의가 있은 지 며칠 뒤, 김수흥의 동생인 이조 판서 김수항도 장훤의 일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의 주장은 개가한 자의 자손은 사판(仕版)에 끼워주지 않는다는 것이 국법에 있지만, 난리 중에 잡혀간 자는 개가한 자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장훤의 어미는 이혼 당했으니 이른바 이혼한 어미의 자식일 뿐이므로 예율(禮律)로 따져 볼 때 영구히 벼슬길을 막을 이치는 없다고 한다.[84] 환향 부녀를 내칠 때의 논리와 자기들 편인 환향 부녀의 아들을 옹호하는 논리가 모순 관계에 있음을 볼 수 있다. 김상헌의 손자들인 김수흥과 김수항은 장훤과 인척 관계의 사람들이다.

장유가 환향 며느리를 내쫓고자 한 것은 오염된 부녀에게 조상 제사를 맡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조상 제사를 맡은 손자 장훤의 처지는 조부가 의도한 것과 반대로 흘렀다. 장유가 환향 부녀를 특정한 존재로 공식

82) 『현종실록』 8년(1667) 7월 15일.
83) 『현종실록』 8년(1667) 7월 15일.
84) 『현종실록』 8년(1667) 7월 24일.

화함으로써 이른바 환향녀 담론이 활성화되었고, 전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그녀들의 몫이 되었다. 30년 후의 양상은 장유가 던져 놓은 프레임대로 환향 부녀는 실행(失行) 부녀와 동일시되고 정절이 없는 부녀로 낙인찍혔다. 그 결과 손자 장훤은 하급 관리의 자리에서도 쫓겨나야 할 존재가 된 것이다. 환향 부녀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4. 절(節)의 젠더 정치학

병자호란 직후 사회통합의 맥락에서 제기된 충절과 정절의 담론을 두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살펴보았다. 즉 김상용이 충절지사(忠節之士)가 되고 적지에서 속환된 그의 외손부 윤씨는 '정절 없는'여자가 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다. 두 사례는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忠臣不事二君, 烈女不更二夫]"는 도덕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나온 서로 연결된 사건이다. 그리고 두 사례는 정치적 지향이 같은 친인척 집단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연결시켜 보아야 할 사건이다. 김상용을 충신으로 만드는 과정과 속환 부녀 윤씨를 내치는 과정의 담론을 통해 절(節)의 개념이 구체적 사건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젠더화하는가를 볼 수 있었다.

충절을 숭상하고 실행(失行)을 저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익과 명분을 확보하는 방법이었다. 충신을 통해 가문과 집단의 정치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하고, 열녀를 통해 가족 남성의 명분이 확보되는 방식이다. 절의는 이익과 명예의 반대개념이지만 김상용을 둘러싼 조선후기의 충절담론에서 드러난 바, 절의는 곧 이익과 명예를 보장하는 것이다. 조상의 죽음을 의미화하는 것은 절의와 충절의 정신을 후세에 알리겠다는 표면적인 이유보다 녹용을 통한 후손의 신분 안정이 더 컸다. 언필칭 "절의는 국가에 있어서 대들보와 같으니, 그 융성하고 쇠퇴함은 나라의 흥망과 관계된다"[85]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익을 은폐하는 수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또 실행녀를 단속하거나 속환녀를 실행녀로 규정하여 정절 문제를 지속적으로 담론화하는 것은

85) 『인조실록』 15년(1637) 10월 28일.

사실 자신의 충성심을 확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절개 잃은 여자와 짝이 되는 것은 자신 또한 절의를 잃은 것이 되기 때문’이고 ‘절개를 강조하는 것은 곧 절의를 중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무너지고 피폐해진 나라를 복구해야 하는 전후의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충신과 열녀라는 도리의 문제에 집착한 당시의 사상계는 그다지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비단 오늘날의 시각으로 과거를 보기 때문만은 아니라 당시에도 이러한 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세상에 융통성 없는 선비들이 경문(經文)의 본뜻은 알지 못하고 한낱 깊이 없는 고루한 견해로 망령스레 조정에 대해 논의하려고 하니, 그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86]

병자호란에 대한 정치・외교・군사・사상 등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시각과 전망을 모색하는[87] 일련의 연구 추이를 볼 때 화약고에 불을 던진 김상용의 행위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석될지 궁금하다. 또 병자호란을 둘러싼 역사 서술에서 당파나 입장을 초월한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대립하는 시각과 주장을 염두에 둔 서술이 되기를 기대한다.[88] 사실 두 사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공식적인 기록을 통해서인데, 자료의 편찬 과정에 작용한 권력 관계로 인해 반대편 주장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진실 규명을 위한 담론 과정을 균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의 발굴도 앞으로의 과제이다.

86) 『인조실록』 15년(1637) 5월 15일.

87) 허태구, 「丙子胡亂 이해의 새로운 시각과 전망」, 『규장각』 제47집,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5.

88)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 12, 한길사, 2015, 247면; 한명기, 『병자호란』 1・2, 푸른역사, 2013 참조. 대부분의 역사서는 김상용의 분사(焚死)를 『인조실록』 15년(1637) 1월 22일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 참고문헌

『맹자』, 『선조실록』, 『숙종실록』, 『승정원일기』, 『영조실록』, 『인조실록』, 『효종실록』.

강석기, 『月塘集』 제3권.
김상헌, 『청음집』 제37권.
김창협, 『농암집』 제6권.
박필주, 『黎湖集』 제28권.
송시열, 『송자대전』 제5・20・53권.
송준길, 『동춘당집』 제8권.
_____, 『동춘당집별집』 제9권.
유숙기, 『兼山集』 제15권.
정사호, 『禾谷集』 제4권.
이관명, 『屛山集』 제15권.
이유원, 『임하필기』 제31권.
장 유, 『계곡집』 제7권.
정두경, 『동명집』 제18권.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11권.
조경남, 『續雜錄』 제2권.
허 목, 『기언별집』 제23권.
홍서봉, 『鶴谷集』 제7권.
황경원, 『江漢集』 제22권.

유정동, 「신유학파의 절의사상」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10호,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1982, 121-130면.
이숙인, 『정절의 역사』, 푸른역사, 2015.
이이화, 『한국사이야기』 12・13, 한길사, 2015.
지두환, 「조선 병자호란 충신 열사에 대한 현창정책」, 『한국학논총』 제34집,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0, 795-819면.
한명기, 『병자호란』 1・2, 푸른역사, 2013.
허태구, 「『江都志』와 『重訂南漢志』의 병자호란 관련 기록 검토」, 『규장각』 제52집,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41-77면.

【Abstr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Doctrines of Loyalty and Chastity in Later Joseon Dynasty

Lee, Sook-In*

This paper analyzes a discourse on doctrines of 'loyalty' (忠節) and 'chastity' (貞節), which was emphasized for the social integration after Byungjahoran on the basis of two particular events in the history of Joseon

dynasty in the 17th century. Firs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ath of Kim, Sang-young (1560-1638), who died by an accidental explosion at a powder magazine in Kang-Hwa island. Although the case was initially reported as accidental death, his family and people have fabricated the cause to make it looks a righteous death to keep his fidelity for his country against the Manchu invasion. By their untruthful report, Kim became known as a loyalist who wanted to show the pride of his country with the virtuous suicide. Since descendants whose ancestor gave up his life for the country could have advantages which would bring them political (as well as economical) benefits, it seem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y fabricated the cause of his accident to occupy the advantageous social position.

Second, this paper also investigates the issue of the "returned captive women". During the Manchu invasion, the troops of Qing have kidnapped many women of Chosen and have brought them to the land of Manchu. After the war, many of the women returned to their homeland. At that time, a number of their husbands asked for a divorce because of doubt of her sexual fidelity. These instances show us that many of the patriarchal men and families attempted to shift the blame on to the women who were the war sufferers, whereas the national policy was to protect them. In this context, it is noteworthy that the patriarchal men or families shared a common political agenda with the group of people who fabricated the cause of the death of Kim Sang-young for their political benefit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 Senior Research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l Univ.

the doctrines of loyalty and chastity are similar psychological phenomenon which share the same roots. As the conclusion,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similarity between the two doctrines, loyalty and chastity, would be understood as a political characteristic of later Chosen dynasty.

Keywords: loyalty, chastity, gender, Byeongjahoran, Kim, Sang-young, returned captive women.

접수일: 2019.12.30. ‖ 심사일: 2020.01.13. ‖ 게재확정일: 2020.02.07.